2024년 3월 16일

제10회 한일 민사소송법 합동대회

도산법의 최근 검토 과제(디지털화를 바탕으로)

아타 히로후미(오사카 변호사회)

제1 디지털화에 이르는 경위와 법 개정 상황

1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를 토대로 하여 한층 더 신속화 및 효율화 등을 도모하고, 민사재판을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관점에서의 개정

2. 민사재판절차의 디지털화 흐름

(1) 민사소송절차의 디지털화
2017년 6월 국무회의 결정 '미래투자전략 2017'
2022년5월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2년 법률 제48호. 2022년 개정법) 공포
시행일: 전면 시행은 2026년 3월까지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
 다만, 2023년 2월 20일, 같은 해 3월 1일, 2024년 3월 1일에 일부 시행.

(2) 민사소송절차 이외의 민사재판절차의 디지털화
2021년 12월 내각회의결정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 계획
2023년 6월 '민사관계절차 등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2023년 법률 제53호. 2023년 개정법) 공포
시행일: 전면 시행은 2028년 6월까지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
 다만, 일부(웹 회의등을 이용한 기일에의 참가등)는, 민사소송법 등의 디지털화의 전면시행일 등에 선행해 시행.
\* 2023년 개정법의 대상
인사소송 및 가정재판소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집행관계소송 외에,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재판절차 전반을 그 대상.
구체적으로는 민사집행, 민사보전, 도산(파산, 민사재생, 회사갱생 등), 비송사건, 민사조정사건, 노동심판사건, 가사사건의 각 절차를 대상.

제2 민사재판절차의 디지털화 장면

1. 신청 등의 온라인화·재판기록의 페이퍼리스화

(1) 전면화
가. 전면화란, 온라인화·페이퍼리스화를 재판 절차 전체에 미치는가 하는 논의이다.
나. 2022년 개정에서는 민사소송절차의 전면적인 온라인화, 페이퍼리스화가 실현되었지만, 2023년 개정에서 파산절차 등에 전면적으로 온라인화, 페이퍼리스화가 실현되었다.

(2) (한정적인) 의무화
가. 의무화란 신청 등의 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의 논의이다.
나. 서면관리 등의 비용 절감이나 절차의 신속화·효율화 등에 의한 사회 전체의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관점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면 국민의 파산절차 등의 이용 기회를 사실상 빼앗게 될 수 있다.
다. 그래서 개정파산법은 모든 신청 등의 이용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외에 파산관재인 등(파산관재인,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대리, 보전관리인대리를 말한다)으로 선임받은 자에 한해 시스템을 사용한 신청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개정 파산법 13조, 개정 민소 132조의11).
라. 덧붙여 신청 등에 시스템을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신청 등 및 수송달 쌍방에 대해, 시스템의 사용이 의무로 되어 있다.
마. 중간시안에서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자에 대해 채권신고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었지만, 현시점에서 의무화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라는 점 등에서 요강안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2. 웹회의 방식의 이용

(1) 웹회의 방식을 도입하는 장점으로서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가. 당사자·대리인이 법원에 실제로 출석하기 위한 시간·비용 등의 부담 경감.
나. 당사자·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용이.
다. 법원에 실제로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당사자(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통신기기를 통해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보장.
라. 법원에 현실로 출석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당사자(DV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 현실 법정 등에서 가해자와 직접 얼굴을 맞대거나 법원 왕복시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에게 통신기기를 통해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보장.
(2)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출석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법원은 당사자의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대석을 요구할 권리까지는 없다.
(3)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현실의 법정 등에서 절차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4) 개정법은 웹회의 방식에서의 관여를 사실적인 출석과 등가로 두지 않는다. 상당성을 요구한다(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요구된다.).

제3 파산절차 등(「파산법」2조1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절차 및 「파산법」12장에서 규정하는 면책·복권과 관련된 절차)의 디지털화

1. 온라인 신청 등 및 시스템 송달

(1) 온라인 신청 등

가. 파산절차 등에서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 등은 모든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법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개정 파산법 13조에서 개정 민소법 132조의 10을 준용).
나. 파산절차 개시신청이나 채권신고, 파산관재인에 의한 법원에 대한 보고 등이 온라인화되게 된다.
다. 신청방법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해지지만, 최고재판소규칙에서는 [일정한]양식에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상정되어 신청 등의 편리성 향상이 기대된다.

(2) 시스템송달
가. 전자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출력서면을 ‘서류의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수송달인이 시스템송달을 받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온라인으로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신고한 경우에는 시스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파산법 13조에 의한 개정민소법 109조 내지 109조의4의 준용).
나. 시스템 송달이란 법원서기관이 ① 송달을 받을 자가 법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송달되어야 할 전자적 기록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② 송달을 받을 자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조치가 취해진 취지의 통지를 하는 규율(개정 민소법 109조 내지 109조의 4)을 말한다.
다. 파산절차 등에서는 송달 외에 송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고지 또는 통지와 같은 것이 있다. 2023년 개정법은 이들에 대해서도 시스템송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 온라인신청 등의 의무이행
가. 파산절차 등에서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에게 온라인신청 등 및 시스템송달의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개정 파산법 13조에 의한 민소법 132조의11의 준용).
나. 파산관재인 등(파산관재인,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대리 및 보전관리인대리를 말한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의무화하고 있다(개정 파산법 13조에 의한 준용).
다. 파산관재인 등의 의무화의 설명방법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① 파산관재인은 신고채권에 관하여 인부를 하거나 임무종료 시에는 보고를 하는 등 법원에 신청 등을 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면 파산채권자표 등의 사건기록이 페이퍼리스화되는 것과 맞물려 신속화·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파산관재인·법원간의 데이터 이용·활용).
②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이며 직무로서 관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의 신속화·효율화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라. 파산관재인은 부동산 등의 임의매각 등의 허가신청이나 채권의 인부서, 재산목록 및 배당표의 제출 등도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

2. 제출된 서면 등 및 기록매체의 디지털화

(1) 온라인으로 제출된(법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기록된) 전자 데이터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건기록이 된다.

(2) 파산절차 등에서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기재되거나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가. 법원서기관은 당해 서면 등에 기재된 사항을 디지털화하여 사건기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을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해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파산법 13조에 따른 개정 민소법 132조의 12 및 13의 준용).
나. 법원에 제출된 서면 등에 기재되거나 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디지털화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 제3자의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이 있었던 영업비밀 중 특히 필요한 것
② 비밀결정(秘匿決定)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비밀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③ 당사자의 열람 등의 제한 신청 또는 당사자의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열람 등의 제한이 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필요한 것
다. 중간시안에서는 기록의 전자화를 하여야 하는 사건의 범위나 지장(支障)부분에 관한 전자화의 예외 필요 여부와 같은 파산사건 특유의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요강안에서는 이러한 논의와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3 )법원 등이 작성하는 문서의 디지털화
　법관이 작성하는 재판서(개정 민소법 252조, 122조)와 법원서기관이 작성하는 조서(동 160조) 및 파산에 있어서의 전자교부계산서와 전자배당표(개정 파산법 191조 1항~3항), 전자파산채권자표 등(개정 파산법 115조)에 관하여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한다.

3. 디지털화된 사건기록의 열람 등

(1) 청구주체에 관한 규칙
디지털화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 등의 청구주체와 관련된 「파산법」 11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다음의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가. 이해관계인은 디지털화된 사건기록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복사(다운로드), 사건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내용을 증명한 문서 또는 전자적 기록의 교부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파산법 11조의2, 11조의3).
나. 「개정 파산법」 1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명령, 보전처분 또는 재판 중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가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파산법 11조의4).

(2) 전자화된 사건기록의 열람 등의 구체적인 방법
전자화된 사건기록의 열람 등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최고재판소규칙에 다음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있다.
가. 이해관계인은 법원설치단말기 및 법원외 단말기를 이용한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신청인, 파산자(채무자), 파산관재인 등 및 "채권자로서 열람 등이 인정된 자"는 언제든지 사건이 계속중에 법원외단말기를 사용한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4. 기일에 있어서의 웹회의 방식 또는 전화회의 방식의 이용

(1) 전체
2023년 개정법에서는 당사자 등이 웹회의 방식이나 전화회의 방식을 이용하여 파산절차 등에 참가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그 요건이나, 웹회의 뿐인지 아니면 웹회의 또는 전화회의 모두 이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마다 그 특성에 근거하여 차이를 마련하고 있다.

(2) 구술변론기일
임의적 구술변론(파산법 8조)에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웹회의방식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다(개정 파산법 13조에 의한 개정 민소법 87조의2제1항 및 3항의 준용).

(3) 심문기일
가. 심문기일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웹회의방식 또는 전화회의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다(개정 파산법 13조에 의한 개정민소법 87조의2제2항 및 3항의 준용).
나. 참고인 등의 심문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회의방식을 이용하여 참고인 또는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이의하지 않은 때에는 전화회의 방식을 이용하여 참고인 또는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개정 파산법 13조에 의한 개정 민소법 187조 3항 및 4항의 준용).

(4) 채권조사기일
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웹회의에 의하여 채권조사기일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파산법 121조의2).
나. 「민소법」 87조의2제1항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웹회의 이용에서는 의견청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5) 채권자집회의 기일
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웹회의에 의하여 채권자집회의 기일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개정 파산법 136조의2).
나. 채권자집회에 대해서도 웹회의 형식이 도입되고 있지만 의견청취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제4 대처해야 할 과제 - 향후 실무 운용

1. 신청 등의 의무화가 일부에 한정된 것 - 신고채권자에 의한 온라인 이용의 추진

(1)민사소송절차에서의 온라인화 인센티브
가. 제소 비용의 저액화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특정신청)의 수수료가 일정 감액되어 있다.
나. 법인 등에 대한 사전의 포괄적인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후술하는 백오피스 연계와도 관련되지만, 자신을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시스템 송달의 신고를 하는 취지를 미리 설정하는 기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도산절차에서도 파산신청 시의 채권자일람표에 채권자의 법인 등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포괄적인 시스템송달을 신고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이나 채권인부의 신속한 시스템송달도 가능하다.
다. 우편송달과 세트로의 시스템 이용(규칙사항)
전자신청 등을 하는 자는 시스템 수송달이 세트 이용이 되므로, 세트 이용의 메리트(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서의 편리성 향상)를 주지함으로써 전자신청으로 유도한다.
라. 백오피스 연계와의 관계
법원과 법무부와의 데이터 연계에 의해 법인 등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사라질 것으로 예산된다.

(2) 파산절차 등에서의 시스템 이용 인센티브
현재의 실무에서는 입수하기 곤란한 정보나 자료, 예를 들면, 채권자 집회에서 배부되는 자료(재산목록, 수지계산서 등), 폐지결정의 제공(파산법 217조 4항)등의 시스템에서의 제공.

(3)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대응 - 서포터 제도의 이용 가능성.
가. 신청 등을 하는 본인이 ID·PW를 입력할 수 없을 때, 서포터가 스스로의 ID·PW를 입력해 신청 등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또한 본인이 서포터에게 입력을 의뢰한 것을 정보로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나.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에 의한 신고 등은 횟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한 채권자가 거기까지의 수고·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전자신청을 할 인센티브가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2. 채권조사기일에 있어서의 웹회의 방식의 실시방법

(1) 파산법에서의 채권조사기일의 위치
가. 채권조사기일이란 파산채권자 등의 관계인이 법원의 면전에서 회합하여 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구두진술 등의 행위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채권조사기일에서는 재판장이 지휘를 하지만 법원 면전에서 하면 족하고 법정에서 이뤄질 필요가 없으며,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청사 밖 회의장이나 공회당 등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채권조사기일은 헌법 82조의 대심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공개 절차다.
다. 파산관재인의 출석은 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이며(파산법 121조 8항), 파산자는 일반조사기일에는 출석의무를 부담한다(같은 조 3항 본문). 한편, 파산채권자의 출석은 기일 개최의 필요 요건이 아니다.

(2) 검토할 사항
웹 회의 방식으로 채권조사기일을 실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생각할 수 있다.
가. 비공개 절차이므로, 현시점에서의 웹회의 방식은 사전에 호스트(법원)가 파산관재인, 파산자, 파산채권자(게스트)에게 초대장을 제공해 둘 필요가 있다.
파산관재인, 파산자에 대한 초대장 제공은 용이하지만 파산채권자에 대한 청첩장은 어떻게 통지할 것인가? 파산개시결정 시에 지정할 것인가?
공고하는 경우에도 비공개성은 담보되는가?
나. 파산관재인, 파산자는 출석을 전제로 하므로 사전에 초대장을 통지하면 충분한데, 파산자는 파산관재인사무소로부터 관여하는가? 독자적인 관여가 가능한가.
다. 재판관이 책상에서 절차를 개최하는 완전 가상의 채권조사기일은 가능한가?
기일 개념(시간 개념)은, 공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
채권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며 기일실시 자체는 예외일 뿐이다.

3. 채권자 집회에서의 웹회의 실시 방법

(1) 파산법에서의 채권자집회의 위치
가. 채권자집회는 채권자에 대한 정보개시의 장인 동시에, 채권자의 의향을 파산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한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나. 채권자집회는 법원의 지휘 하에 열린다(파산법 137조). 보통 법원 내에서 열리지만 대규모 사건에서는 법원 밖의 공회당 등에서 열리기도 한다.
다. 파산법이 예정하는 채권자집회는 ① 재산상황보고집회(파산법 31조 1항 2호), ② 이시폐지결정에 있어서의 의견청취집회(동217조 1항), ①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동88조, 89조), ④ 소정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집회(동135조)이다.
라. 채권자집회의 기일은 파산관재인, 파산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를 소환하여야 한다(파산법 136조 1항).

(2) 회사법에서의 가상주주총회 상황
가. 경위
① 2005년 제정된 회사법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소집통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298조 1항 1호, 299조 4항).
② 2021년 6월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에 따라 회사법의 특칙으로 '장소의 정함이 없는 주주총회'에 관한 제도가 창설됐다.
상장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는 것 등으로 가상 온리(only)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나. 주주총회실시형식
① 리얼(real)주주총회
이사나 주주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물리적인 장소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
② 하이브리드 가상주주총회
a. 하이브리드 참여형 가상주주총회
리얼주주총회의 개최에 더하여 리얼주주총회의 개최장소에 소재하지 않는 주주가, 주주 총회에의 법률상의 「출석」을 수반하지 않고, 인터넷등의 수단을 이용해 심의 등을 확인·방청함.
의결권 행사의사가 있는 주주는 사전의결권 행사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
b. 하이브리드 출석형 가상주주총회
리얼주주총회의 개최와 더불어 리얼주주총회의 장소에 소재하지 않는 주주가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해 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도 관여함.
③ 가상온리형 주주총회
리얼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나 주주 등이 인터넷등의 수단을 이용해, 주주총회에 회사법상의 ‘출석’.

(3) 유의 사항
가.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자집회로서 어떠한 패턴을 상정할 것인가?
나. 출석형에서는 정보전달의 양방향성과 즉각성 확보가 필요한데 가능한가? 참가형에서는 사전 행사가 전제되지만, 법제도로서 사전 행사가 가능한가?